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10.(수) 11:00,
(지면) 2024. 4. 11.(목) 조간

배포 2024. 4. 10.(수) 06:00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수한 국내 수산식품기업을 지원합니다

- 4. 11.(목)~5. 10.(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 유통, 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실시한다.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식품기업에 시장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보조율 : 대기업 50%, 그 외 기업 70%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상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수산물 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우리 수산식품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산식품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 수산식품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공모에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허남기 (044-200-5425)

수산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년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 목적

- 현지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진출 확대 도모

2. 지원 자격

- 수산식품기업은 수산식품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등 수산식품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어분 포함)

3. 지원기업 선정 방법

- 계량평가(30점) : 재무건전성 심사(국세청 표준 재무제표로 평가)
- 비계량평가(70점) : 참가계획서, 업체별 PT발표(20분 내외)
 - *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조사 적정성, 정책 연관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종합평가
 - *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 온라인(화상) 또는 오프라인 평가회 실시(응모기업에게 일정 별도 공지)

○ (선정)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합산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지원기업 규모 및 예산 배정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예비 기업까지 순위 도출)

* KMI와 선정 기업 간 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예비 기업으로 대체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분포 및 배점						
		분포	100~90	89~79	78~68	67~57	56이하	미제출
계량 평가 (30점)	자기자본 비율(%)	분포	100~90	89~79	78~68	67~57	56이하	미제출
		배점	7.5	6	4.5	3	1.5	0.5
	부채비율 (%)	분포	50미만	50~100	100~200	200~300	300이상	미제출
		배점	7.5	6	4.5	3	1.5	0.5
	매출액 (억원)	분포	100이상	70~100	40~70	10~40	10미만	미제출
		배점	7.5	6	4.5	3	1.5	0.5
유동비율 (%)	분포	200이상	150~200	100~150	50~100	50미만	미제출	
	배점	7.5	6	4.5	3	1.5	0.5	
비계량 평가 (70점)	사업 타당성 및 추진의지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대상국 이해도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전문가 활용 적정성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조사 계획의 적정성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정책과의 연관성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사업 추진 가능성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사업 기대효과	분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10	8	6	4	2	

* 계량평가는 기업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의 3년치(연말 기준) 평균값으로 평가

- 자기자본비율 : $(\sum 3년\ 자기자본 / \sum 3년\ 총자산) \times 100$
- 부채비율 : $(\sum 3년\ 부채 / \sum 3년\ 자기자본) \times 100$
- 매출액 : $(\sum 3년\ 매출액) / 3$
- 유동비율 : $(\sum 3년\ 유동자산 / \sum 3년\ 유동부채) \times 100$

* 계량평가 가중치

- 3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 + 유동비율) \times 1.0$
- 2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 + 유동비율) \times 0.8$
- 1년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매출액 + 유동비율) \times 0.6$

○ 결과발표 : 서면 통보

4. 보조금 지원

가. 지원기준

- 국내외 조사 경비 및 전문가(또는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등 경비 일부 지원

나. 지원항목

- 전문가(또는 전문업체)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항목 및 규정은 “첨부 1. 보조금 지원항목 및 기준” 참조

다.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1.5억원)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기준	총 사업비(국고 보조)	보조율(%)	국고 보조 한도
대기업	150백만원	50	기업 당 1억 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등		70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도에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 기업 선정 규모 및 지원 예산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라.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급

- 조사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7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금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조사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5. 조사 시행 및 보고서 제출

가. 조사 시행

- 시행기한 : KMI와 기업 간 약정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 사업 착수

- 조사기간 : 조사계획서 심사 후 결정(사업자 선정 후 최대 5개월 이내 완료)

- 단, 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 완료

나. 보고서 접수

- 지원기업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담당자 접수를 거쳐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결과물로 확정

6.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1일~2024년 5월 10일(18:00限 접수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등기)로만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4층 해외시장분석센터 이
상건 부연구위원(051-797-4597)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첨부 2.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 1 참조)
- ② 사업계획서 1부(첨부 2.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 2 참조)
-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④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⑤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⑥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 및 제출 서류 미흡으로 전문가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 5등급으로 분류)
- ⑦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2. 수산식품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 3 참조)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간정보 삭제

* 최근 3년간('21년~'23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단, 3년 미만 법인은 해당 연수에 맞는 재무제표 제출)

- 신청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사후 관리

- 기업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수산물수출정보포털 (www.kfishinfo.co.kr)에 공개
 - *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 완료 후 3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가능

8. 문의처

- 운영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 담당자 : 이상건 부연구위원(051-797-4597 / sglee@kmi.re.kr)
박지현 전문연구원(051-797-4548 / pjh202@kmi.re.kr)

9. 선정 관련 기타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출기한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첨부> : 1. 보조금 지원항목 및 기준. 1부.
2.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